

군산시 공고 제2012-1968호

공 고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시행지침에 따른 일반직 정원 반영
- 근거 : 전라북도 정책기획관-7081(2011.10.4)

2. 주요내용

-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시행 지침에 따른 공무원 총 정원 증원
- 정원의 총수 변경 : 1,351명 ⇒ 1,358명 (+7명)
 - 사회복지직 순증분 정원 조정
 - 일반직 정원 변경 : 1,117명 → 1,124명 (+7명)
 - 조정내역 : 사회복지 9급(+7명)

3. 참고사항

- 지방공무원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등에 관한 규정
- 예산조치
 - 정원조정에 따른 소요경비 : 210,000천원 정도
 - 30,000천원(연간) × 7명 = 210,000천원
 - ※ 인건비 기준 : 보건복지부주관, 국고보조사업(보조금)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0월 25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총무과(☎ 063-450-4233, FAX:450-6384)
-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총무과 인사계(☎ 063-450-423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군산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1,351명”을 “1,358명”으로 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326명”을 “집행기관의 정원 : 1,333명”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계	1,358	-				
정무직계	1	-				
시 장	1	1				
일반직 계	1,124	-				
3급	1	1				
4급	8	4	1	1	2	
5급	73	33	3	3	7	27
6급 이하 계	1,042	-				
별정직 계	15	-				
6급 상당 이하 계	15	-				
연구직 계	4	-				
연구사	4			3	1	
지도직 계	32	-				
지도관	3			3		
지도사	29			29		
기능직계	182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p>제2조(정원의 총수) 군산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1,351명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1,326명</p> <p>2. (생략)</p> <p>【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기관별 직급별</th> <th>총 계</th> <th>본청</th> <th>의회 사무국</th> <th>직속 기관</th> <th>사업 소</th> <th>읍면 동</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1,351</td> <td colspan="5">-</td> </tr> <tr> <td>정무직계</td> <td>1</td> <td colspan="5">-</td> </tr> <tr> <td>시 장</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1,117</td> <td colspan="5">-</td> </tr> <tr> <td>3급</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8</td> <td>4</td> <td>1</td> <td>1</td> <td>2</td> <td></td> </tr> <tr> <td>5급</td> <td>73</td> <td>33</td> <td>3</td> <td>3</td> <td>7</td> <td>27</td> </tr> <tr> <td>6급 이하 계</td> <td>1,035</td> <td colspan="5">-</td> </tr> <tr> <td>별정직 계</td> <td>15</td> <td colspan="5">-</td> </tr> <tr> <td>6급 상당 이하 계</td> <td>15</td> <td colspan="5">-</td> </tr> <tr> <td>연구직 계</td> <td>4</td> <td colspan="5">-</td> </tr> <tr> <td>연구사</td> <td>4</td> <td></td> <td></td> <td>3</td> <td>1</td> <td></td> </tr> <tr> <td>지도직 계</td> <td>32</td> <td colspan="5">-</td> </tr> <tr> <td>지도관</td> <td>3</td> <td></td> <td></td> <td>3</td> <td></td> <td></td> </tr> <tr> <td>지도사</td> <td>29</td> <td></td> <td></td> <td>29</td> <td></td> <td></td> </tr> <tr> <td>기능직계</td> <td>182</td> <td colspan="5">-</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 소	읍면 동	총계	1,351	-					정무직계	1	-					시 장	1	1					일반직 계	1,117	-					3급	1	1					4급	8	4	1	1	2		5급	73	33	3	3	7	27	6급 이하 계	1,035	-					별정직 계	15	-					6급 상당 이하 계	15	-					연구직 계	4	-					연구사	4			3	1		지도직 계	32	-					지도관	3			3			지도사	29			29			기능직계	182	-					<p>제2조(정원의 총수) 총수) -----1,358명 -----.</p> <p>1. ----- 1,333명</p> <p>2. (현행과 같음)</p> <p>【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기관별 직급별</th> <th>총 계</th> <th>본청</th> <th>의회 사무국</th> <th>직속 기관</th> <th>사업 소</th> <th>읍면 동</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1,358</td> <td colspan="5">-</td> </tr> <tr> <td>정무직계</td> <td>1</td> <td colspan="5">-</td> </tr> <tr> <td>시 장</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1,124</td> <td colspan="5">-</td> </tr> <tr> <td>3급</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8</td> <td>4</td> <td>1</td> <td>1</td> <td>2</td> <td></td> </tr> <tr> <td>5급</td> <td>73</td> <td>33</td> <td>3</td> <td>3</td> <td>7</td> <td>27</td> </tr> <tr> <td>6급 이하 계</td> <td>1,042</td> <td colspan="5">-</td> </tr> <tr> <td>별정직 계</td> <td>15</td> <td colspan="5">-</td> </tr> <tr> <td>6급 상당 이하 계</td> <td>15</td> <td colspan="5">-</td> </tr> <tr> <td>연구직 계</td> <td>4</td> <td colspan="5">-</td> </tr> <tr> <td>연구사</td> <td>4</td> <td></td> <td></td> <td>3</td> <td>1</td> <td></td> </tr> <tr> <td>지도직 계</td> <td>32</td> <td colspan="5">-</td> </tr> <tr> <td>지도관</td> <td>3</td> <td></td> <td></td> <td>3</td> <td></td> <td></td> </tr> <tr> <td>지도사</td> <td>29</td> <td></td> <td></td> <td>29</td> <td></td> <td></td> </tr> <tr> <td>기능직계</td> <td>182</td> <td colspan="5">-</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 소	읍면 동	총계	1,358	-					정무직계	1	-					시 장	1	1					일반직 계	1,124	-					3급	1	1					4급	8	4	1	1	2		5급	73	33	3	3	7	27	6급 이하 계	1,042	-					별정직 계	15	-					6급 상당 이하 계	15	-					연구직 계	4	-					연구사	4			3	1		지도직 계	32	-					지도관	3			3			지도사	29			29			기능직계	182	-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 소	읍면 동																																																																																																																																																																																																																																									
총계	1,351	-																																																																																																																																																																																																																																													
정무직계	1	-																																																																																																																																																																																																																																													
시 장	1	1																																																																																																																																																																																																																																													
일반직 계	1,117	-																																																																																																																																																																																																																																													
3급	1	1																																																																																																																																																																																																																																													
4급	8	4	1	1	2																																																																																																																																																																																																																																										
5급	73	33	3	3	7	27																																																																																																																																																																																																																																									
6급 이하 계	1,035	-																																																																																																																																																																																																																																													
별정직 계	15	-																																																																																																																																																																																																																																													
6급 상당 이하 계	15	-																																																																																																																																																																																																																																													
연구직 계	4	-																																																																																																																																																																																																																																													
연구사	4			3	1																																																																																																																																																																																																																																										
지도직 계	32	-																																																																																																																																																																																																																																													
지도관	3			3																																																																																																																																																																																																																																											
지도사	29			29																																																																																																																																																																																																																																											
기능직계	182	-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 소	읍면 동																																																																																																																																																																																																																																									
총계	1,358	-																																																																																																																																																																																																																																													
정무직계	1	-																																																																																																																																																																																																																																													
시 장	1	1																																																																																																																																																																																																																																													
일반직 계	1,124	-																																																																																																																																																																																																																																													
3급	1	1																																																																																																																																																																																																																																													
4급	8	4	1	1	2																																																																																																																																																																																																																																										
5급	73	33	3	3	7	27																																																																																																																																																																																																																																									
6급 이하 계	1,042	-																																																																																																																																																																																																																																													
별정직 계	15	-																																																																																																																																																																																																																																													
6급 상당 이하 계	15	-																																																																																																																																																																																																																																													
연구직 계	4	-																																																																																																																																																																																																																																													
연구사	4			3	1																																																																																																																																																																																																																																										
지도직 계	32	-																																																																																																																																																																																																																																													
지도관	3			3																																																																																																																																																																																																																																											
지도사	29			29																																																																																																																																																																																																																																											
기능직계	182	-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시행지침에 따른 일반직 정원 반영
- 군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별표 3]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시행 지침에 따른 공무원 총 정원 증원
- 정원의 총수 변경 : 1,351명 ⇒ 1,358명 (+7명)

나. 비용추계 결과

- 정원조정에 따른 소요경비 : 210,000천원 정도
· 30,000천원(연간) × 7명 = 210,000천원
※ 인건비 기준 : 보건복지부주관, 국고보조사업(보조금)

다. 재원조달방안

- 보건복지부주관, 국고보조사업(보조금)

3. 작성자

작성자	군산시 자치행정국 총무과장 이장식
연락처	(063) 450 - 423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계
세 입							
국고보조							
세 출		210,000	210,000	210,000	218,400	227,136	1,075,536
인 건 비		210,000	210,000	210,000	218,400	227,136	1,075,536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218,400	227,136	
	지방세				218,400	227,136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210,000	210,000	210,000			
	보조금	210,000	210,000	210,0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12조) ▶

-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2-1969호

공 고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시행 지침에 따른 일반직 정원 반영
 - 근거 : 전라북도 정책기획관-7081(2011.10.4)

2. 주요내용

-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시행 지침에 따른 공무원 총 정원 증원
 - 정원의 총수 변경 : 1,351명 ⇒ 1,358명 (+7명)
 - 사회복지직 순증분 정원 조정
 - 일반직 정원 변경 : 1,117명 → 1,124명 (+7명)
 - 조정내역 : 사회복지 9급(+7명)

3. 참고사항

- 지방공무원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등에 관한 규정
- 예산조치
 - 정원조정에 따른 소요경비 : 210,000천원 정도
 - 30,000천원(연간) × 7명 = 210,000천원
 - ※ 인건비 기준 : 보건복지부주관, 국고보조사업(보조금)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0월 25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총무과(☎ 063-450-4233, FAX:450-6384)
-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총무과 인사계(☎ 063-450-423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와 관련)

[별표]

[총괄]

기관별		합계	본청	의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직급별	직렬별										
총괄		1358	742	25	94	41	155	13	118	170	
정무직계		1	1								
일반직계		1124	631	18	89	1	101	12	104	168	
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8	4	1	1		2				
	행정	3	1	1			1				
	기술	1			1						
	행정·기술	4	3				1				
5급	소계	73	33	3	3		7	1	10	16	
	행정	16	14				2				
	해양수산	1	1								
	의무	1			1						
	시설	2	2								
	행정·사회	3	3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8	7				1				
	행정·통신	1	1								
	행정·별정	3		3							
	보건·의무	1			1						
	행·사회·보	2									2
	행·사회·의기	1									1
	행·사회·시	4									4
	행·시·사서	2									2
	행·농·공										
	행·시·공	2									2
	행·농·녹	1								1	
	행·농·해수	1	1								
	행·농·보	1									1
행·농·간	2								2		
행·농·환	1								1		
행·환·녹	1						1				

	행 · 시 · 녹	1	1							
	행 · 시 · 해 수	1							1	
	행 · 보 · 의 기	1							1	
	행 · 보 · 간	1			1					
	행 · 시 · 의 기	1							1	
	행 · 시 · 환	1					1			
	행 · 시 · 통	1							1	
	보 · 환 · 공 업	1	1							
	행 · 사회 · 농 · 공	1							1	
	행 · 농 · 공 · 환	1							1	
	행 · 농 · 공 · 시	1							1	
	행 · 농 · 간 · 녹	1							1	
	행 · 농 · 시 · 해 수	2						1	1	
	행 · 농 · 보 · 환	1							1	
	6급	소 계	259	156	6	16		25	3	30
행 정		76	53	3			7			13
세 무		2	2							
전 산		1	1							
사 회 복 지		1	1							
공 업		2					2			
농 업		2	2							
녹 지		2	2							
해 양 수 산		2	2							
보 건		1	1							
보 건 진 료		6			6					
시 설		18	16				2			
행 정 · 세 무		9	9							
행 정 · 전 산		1	1							
행 정 · 사 회		31	15						9	7
행 정 · 사 서		3					3			
행 정 · 공 업		5	2				2			1
행 정 · 농 업		17	3					1	11	2
행 정 · 녹 지		1	1							
행 정 · 해 양 수 산		2	2							
행 정 · 보 건		3			1				2	
행 정 · 환 경		3	2					1		
행 정 · 시 설		21	19				2			
행 정 · 별 정		4	2	2						
시 설 · 전 산		1	1							
전 산 · 통 신	1	1								
공 업 · 환 경	4	2				2				
공 업 · 시 설	3	1				2				
농 업 · 수 의	2	2								

	농업·시설	1	1							
	녹지·시설	2	2							
	해양수산·환경	1	1							
	보건·식품	1	1							
	보건·간호	1			1					
	보건·환경	1	1							
	행·세·농	1						1		
	행·전산·통	1	1							
	행·농·녹									
	행·농·해수	1	1							
	행·농·시	3					1	2		
	행·시·녹	1	1							
	행·시·해수	1						1		
	행·보·간	1			1					
	행·보·환	1	1							
	행·환·시	1	1							
	보·환·공업	2	1				1			
	시·환·공	2					2			
	보·간·의기	7			7					
	행·세·농·녹	2							2	
	행·사회·해·시	1							1	
	행·사회·보·간	1	1							
	행·농·해·시	1							1	
행·농·시·별	1		1							
7급	소 계	349	208	5	25	1	32	4	29	45
	행정	136	88	4	1		11	1	5	26
	세무	2	2							
	전산	1	1							
	사회복지	18						1	8	9
	사서	5					5			
	공업	9	2				7			
	농업	7	7							
	녹지	4	4							
	수의	1	1							
	해양수산	6	6							
	보건	8	2		5		1			
	식품위생	1	1							
	간호	6			5		1			
	보건진료	5			5					
	환경	6	5				1			
	시설	41	36	1			4			
	방송통신	2	2							
행정·세무	23	18							5	

	행정·전산	3	3							
	행정·사회	20	15						5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13	1			1		1	10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12	5					1	6	
	행정·별정	2	2							
	공업·환경	3	2				1			
	보건·식품	1	1							
	공·환·보	1					1			
	보·간·의기	9			9					
8급	소 계	274	149	3	37		24	2	17	42
	행정	104	59	2			7	1	2	33
	세무	4	4							
	전산	3	2	1						
	사회복지	9	1						2	6
	사서	3					3			
	공업	10	6				4			
	농업	1	1							
	녹지	3	3							
	해양수산	6	6							
	보건	17	5		12					
	의료기술	9			9					
	간호	2			2					
	보건진료	7			7					
	환경	3	3							
	시설	34	26				7		1	
	방송통신	2	2							
	행정·세무	9	9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	13	12							1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10						1	7	2
	행정·보건	1			1					
	행정·간호	3			3					
	행정·시설	11	6						5	
세무·전산	1	1								
전산·통신	1	1								
공업·환경	2					2				

	간 호 · 의 기	3			3					
9급	소 계	160	80		7		11	2	18	42
	행정	48	15				2	1	9	21
	세무	10	10							
	전산	2	2							
	사회복지	53	23					1	8	21
	사서	5					5			
	공업	5	3				2			
	농업	2	1						1	
	녹지	2	2							
	보건	8	1		6		1			
	의료기술	1			1					
	환경	2	2							
	시설	21	20				1			
	방송통신	1	1							
지 도 직 계		32			32					
지도관	소 계	3			3					
	농촌지도	3			3					
지도사	소 계	29			29					
	농촌지도	29			29					
연 구 직 계		4			3	1				
연구사	소 계	4			3	1				
	환경연구사	1			1					
	농업연구사	2			2					
	학예연구사	1				1				
기 능 직 계		182	100	7	5	3	50	1	14	2
기능 6급	소 계	7	6						1	
	운전	1	1							
	사무	1	1							
	선박항해	2	1						1	
	전기	1	1							
	기계	1	1							
	조무	1	1							
기능 7급	소 계	29	18		1		8		2	
	운전	7	6		1					
	사무	5	4				1			
	선박항해	3	2						1	
	통신	1	1							
	선박기관	2	1						1	
	전기	1					1			
	기계	6	2				4			
	조무	4	2				2			
기능	소 계	40	24	1	2	1	11		1	

8급	운 전	12	9		1	1	1				
	사 무	2		1			1				
	선 박 항 해	3	2						1		
	통 신	2	2								
	선 박 기 관	2	2								
	전 화 상 담	1	1								
	건 축	1	1								
	위 생	1	1								
	열 관 리	3			1			2			
	전 기	3	1					2			
	기 계	8	4					4			
	조 무	2	1					1			
기능 9급	소 계	106	52	6	2	2	31	1	10	2	
	운 전	9	4	2	1		2				
	사 무	41	32	2	1		6				
	선 박 항 해	1							1		
	통 신	2	1	1							
	전 화 상 담	2	2								
	위 생	4	1				3				
	열 관 리	6	2				4				
	농 림	1				1					
	화 공	1					1				
	사 육	2					2				
	전 기	7	3				4				
	기 계	11	5	1			5				
	조 무	7	2				1	4			
사 무 · 조 무	12							1	9	2	
별 정 직 계		15	10			2	3				
6급 상당	소 계	3	3								
	홍 보 연 구 관	1	1								
	비 서	1	1								
	문 화 재 연 구 원	1	1								
7급 상당	소 계	12	7			2	3				
	보건위생감시원	2	2								
	청소년수련지도사	3	3								
	박물관운영요원	1	1								
	농기계교육교관	2				2					
	공기업 회계원	1					1				
	수영강사	2					2				
	체육진흥요원	1	1								

신·구조문 대비표

행										개 정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 [총괄]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 [총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	면	동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	면	동
총괄	1351	735	25	94	41	154	13	118	170	총괄	1358	742	25	94	41	155	13	118	170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일반직 계	1117	624	18	89	1	99	12	104	168	일반직 계	1124	631	18	89	1	101	12	104	168
9급	소계	153	73		7	11	2	18	42	9급	소계	160	80		7	11	2	18	42
	사회복지	46	16				1	8	21		사회복지	53	23					1	8

군산시 공고 제2012-1970호

공 고 (안)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인구를 증가시키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안 제1조)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임신·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인구를 증가시키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사회적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지원대상 (안 제3조)

- 1년 이상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
- 1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 전입후 거주 기간이 1년이상 경과 후 지원
- 신생아의 부모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신생아가 부모중 1인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신생아 출생 후 제1호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 미혼모가 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생등록 할 경우
- 지급기준은 2013. 1. 1일부터 출생한 신생아로 한다.

다. 지원기준 (안 제4조) 별표1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별표1 기준에 의거 지원한다.

구 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상
지원금액	50,000원	200,000원	400,000원	1,000,000원

- ※ 단, 넷째아 이상의 장려금 50%는 6개월 후에 지급하며, 제3조(지원대상)에 제외될 때에는 잔여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 지원 신청인 (안 제5조)

- 장려금 지원신청자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마. 지원신청 (안 제6조)

-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관할 읍면동장에게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 지원신청은 신생아 출산 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0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여성아동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17번지

군산시 여성아동복지과(전화063-450-6055, 팩스063-452-947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여성아동복지과 다문화정책계(전화063-450-60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인구를 증가시키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생아”라 함은 출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말한다
2. “출산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한다)이라 함은 신생아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하여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해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3. “가정”이라 함은 신생아의 부모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함께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4. “지원대상자”라 함은 신생아와 함께 부모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시 관내에 거주하는 부모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으로 한다.

②부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타시군에서 시 관내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③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이 된다.

1.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생아가 부모 중 1인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2. 신생아 출생 후 제1호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갖

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3. 미혼모가 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생 등록 할 경우

④ 지급기준은 2013. 1. 1일부터 출생한 신생아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별표1 기준에 의거 지원한다.

제5조(지원 신청인) ①장려금 지원 신청인(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②제3조 제3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제6조(지원신청) ①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관할 읍·면·동장에게 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지원신청 구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예금통장 사본 1부

③지원신청은 신생아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절차) ①관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 서식 출산장려금 신청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출산장려금지원 대상자확인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장려금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별지 제3호서식 출산장려금 지급대장에 기재 후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①시장은 장려금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려금을 환수하였을 때에는 장려금 지원대장에 그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 관리 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 등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면·동장은 출산장려금 신청·접수 대장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장 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출산장려금지원기준(제4조관련)

(단위:원)

구 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상
지원금액	50,000	200,000	400,000	1,000,000

※ 단, 넷째아 이상의 장려금에 대하여는 50%는 제7조2항에 의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6개월이 되는 달 지급하며, 이 기간 동안 제3조(지원대상)에 제외 될 때에는 잔여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별지 제1호 서식]

출산장려금신청서(제6조관련)

보 호 자	부		주민등록번호		군 산 시 거주기간	년 월
	모		주민등록번호		군 산 시 거주기간	년 월
신 생 아	성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출산순위	<input type="checkbox"/> 첫째아 <input type="checkbox"/> 둘째아 <input type="checkbox"/> 셋째아 <input type="checkbox"/> 넷째아 <input type="checkbox"/> 다섯째아 이상(번째아)				
	출생의료 기 관		출생일자		년 월 일	
	전라북도 군산시		읍 · 면 · 동	리	번지	
		아파트		동 호		
전화번호	자택		핸드폰			
입금계좌 번 호	은행명()계좌번호 () 예금주 ()					
군산시 출산장려지원금에 관한 제6조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위와 같이 군산시출산장려금지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임을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 년 월 일</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출산장려 담당자(직급) (성명) 서명 읍면동장 (직인) </div>						
군 산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 부모 또는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별지 제2호 서식]

출산장려금 신청·접수 대장(제9조 관련)

연번	접수 일자	신생아					장려금 신청자					담당자 확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출생 일자	출생 순위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신생아와 관계	연락처	

군산시 공고 제2012-1976호

공 고

우리시 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우리시 조직개편과 시 행정 변화에 따라 군산시발전협의회 구성 체계 및 직 무가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자리창출분과와 녹색성장분과 간사 변경

개 정 전	개 정 후
<일자리창출분과 간사> ↳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분과 간사> ↳ 투자지원과
<녹색성장분과 간사> ↳ 환경위생과, 투자지원과	<녹색성장분과 간사> ↳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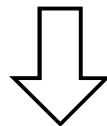


○ 지역산업분과 간사변경

개 정 전	개 정 후
<지역산업분과> ↳ 농정과, 해양수산과	<지역산업분과> ↳ 농정과, 해양수산과, 농수산물유통과

○ 일자리창출분과와 녹색성장분과 직무 변경

개 정 전	
일자리창출분과	- 지역발전 사업 개발 - 일자리 창출 사업 발굴 - 지역전략 산업 및 특화사업 연구개발
녹색성장분과	-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정책 자문 - 녹색성장 및 과학기술 산업 투자지원



개 정 후	
일자리창출분과	- 지역일자리 발굴육성 - 일자리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전략수립
녹색성장분과	-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정책 자문 - 녹색성장 및 과학기술산업 육성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1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063-450-6511, FAX:452-8157)

라.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마.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기획예산과 창의분권계(☎ 063-450-6511)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규칙 제 호

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안)

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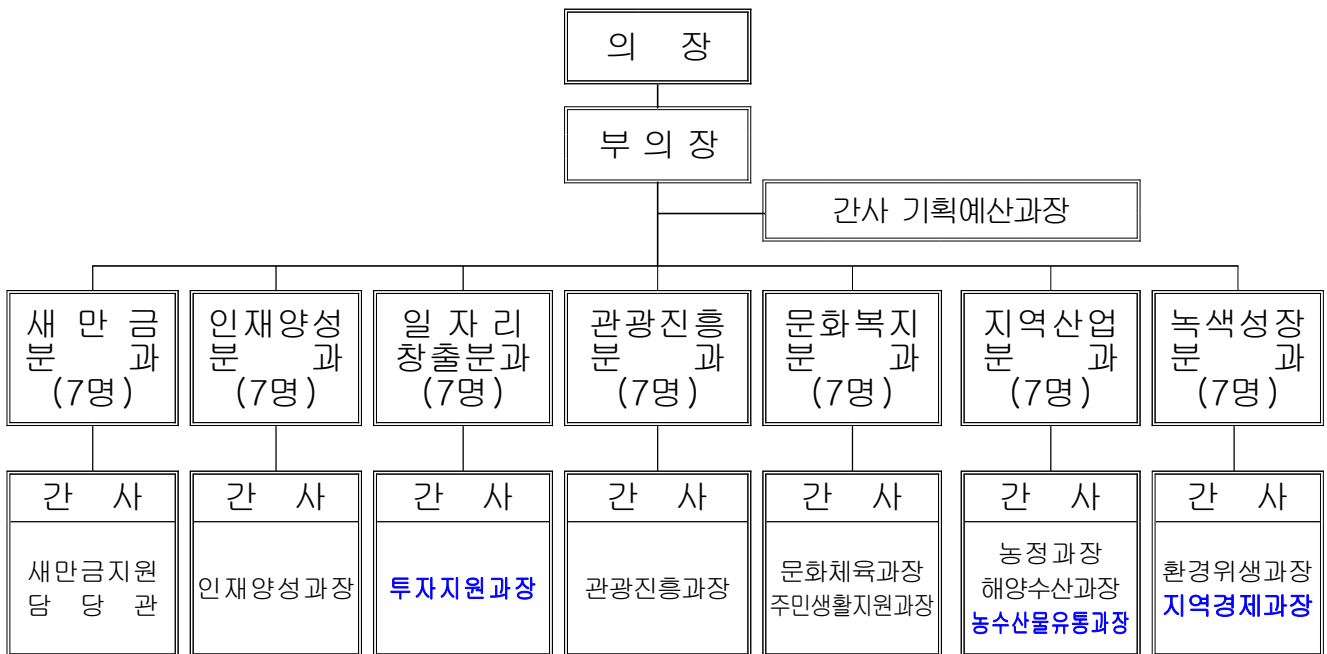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협의회 구성 체계 및 직무 (별표 1)

○ 구성 체계(7개 분과 - 50명 이내)



○ 분과별 직무

새만금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 자원 활용 군산 발전방안 연구 - 새만금 산업 인프라 전략 수립 - 새만금 사업 등 법률자문
인재양성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재양성, 교육환경 개선,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 교육지원 사업 연구 개발 - 중장기 교육 진흥사업 연구 개발
일자리창출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일자리 발굴육성 - 일자리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전략수립
관광진흥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사업의 진흥 및 지역축제 개발 - 중장기 관광산업 육성 방안 연구
문화복지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문화예술 및 체육 진흥 방안 연구 - 지역복지 인프라 구축 및 복지서비스 연계사업 지원
지역산업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특산물 경쟁력 향상 사업 발굴 - 농수특산물 브랜드 강화 방안 연구 - 중장기 지역산업 육성방안 연구
녹색성장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정책 자문 - 녹색성장 및 과학기술산업 육성 - 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지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구성 체계 <일자리창출분과 간사> <u>지역경제과장</u> <지역산업분과 간사>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녹색성장분과> 환경위생과장, <u>투자지원과장</u></p> <p>○ 분과별 직무 <일자리창출분과> · <u>지역발전 사업 개발</u> · <u>일자리창출 사업 발굴</u> · <u>지역전략 산업 및 특화사업 연구개발</u> <녹색성장분과> ·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정책 자문 · <u>녹색성장 및 과학기술 산업 투자지원</u></p>	<p>○ 구성 체계 <일자리창출분과 간사> <u>투자지원과장</u> <지역산업분과 간사> ----, -----, <u>농수산물유통과장</u> <녹색성장분과> -----, <u>지역경제과장</u></p> <p>○ 분과별 직무 <일자리창출분과> · <u>지역일자리 발굴육성</u> · <u>일자리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전략수립</u> · (삭제) <녹색성장분과> · ----- · <u>녹색성장 및 과학기술산업 육성</u> · <u>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지원</u></p>

군산시 공고 제2012-1990호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제정 입법예고

군산 예술의전당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일

군 산 시 장

1. 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 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공시설인 군산예술의 전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 및 설비 사용료 징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제정법규명

◎ 군산 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3. 주요 제정내용

가. 군산예술의전당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시설 사용허가, 대관신청, 사용허가의 제한, 사용허가 취소·사용

정지·변경 등의 규정(안 제3조~제6조)

다. 전당시설의 사용시간, 사용료 및 감면기준, 사용료의 반환 기준
(안 제7조~제9조)

라. 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 변상책임 근거, 전당
사용 허가 후 양도 및 전대의 금지규정(안 제10조~제12조)

마. 관람료의 징수, 사용자의 관람권 발행 및 관리규정, 입장의 제한
사항 규정(안 제13조~제16조)

바. 시설내 출입과 반입물의 제한 규정, 공연안전 및 유지관리사항
규정(안 제17조~제18조)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1월 05일까
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예술의전당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73-869 군산시 대학로 308 예술의전당관리과

(전화:450-6572, FAX:462-9309)

라.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예술의전당관리과 시설운영계(450-6572)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향상 및 공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군산예술의전당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산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당의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전당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및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전당의 사용자가 전당의 사용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전당의 공연장, 전시실에 관람을 목적으로 입장한 자를 말한다.
6.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설사용의 허가) ①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전당의 시설 및 설비 중 대관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전시실, 세미나실, 연습실 및 부속시설
2. 부대시설 :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분장실 및 그 밖의 행사에 필요한 모든 부속기기와 냉·난방시설

제4조(대관신청)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시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당에서 정한 신청서 양식에 준하여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포교집회, 노동집회, 상행위,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공연관계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대관허가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전당의 운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허가의 취소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지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시간) ① 전당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1회사용으로 본다.

1. 오 전 : 08:00 부터 12:00 까지
2. 오 후 : 13:00 부터 17:00 까지
3. 야 간 : 18:00 부터 22:00 까지
4. 전시장 : 09:00 부터 20:00 까지

②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 전시, 행사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

물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진 때로 하며, 사용종료 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로 한다.

제8조(사용료 및 감면기준) 사용료는 별표 1과 같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산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 전시
2.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전시, 행사등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산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허가취소·사용중지 된 경우
3. 신청인이 사용 30일전에 원(願)에 의하여 취소하는 경우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의 설치, 홍보물 게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경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 등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전당의 시설 또

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전당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전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3조(관람료의 징수)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공연, 전시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권 발행을 통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대상과 할인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용자의 관람권 발행)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전시,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행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좌석수 등 관람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고, 발매 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 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은 좌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으며 관람권을 수용능력 이상으로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람권에는 관람자의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관람권 관리) ①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대표하고 관람권의 수표는 전당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대표를 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의한 대표 수수료는 관람료의 10%를 징수한다.

제16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 및 정신 이상자
3. 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4. 그 밖에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시설 및 타인의 안전관리에 위협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17조(출입과 반입물의 제한) 시장은 전당내의 질서유지, 시설물 보호,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인의 출입과 특정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공연안전 및 유지관리) ① 사용자는 시장의 요청 시 원활한 공연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요원 및 공연지원스텝을 두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연장의 안전을 위하여 무대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일정을 둘 수 있다.

제19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며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군산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3년도 개관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군산예술의전당 시설 및 사용료(제8조관련)

1. 사용시간

구 분	시 간(공연장)	비 고
1일	09:00 ~ 22:00	전시실 사용시간 (09:00 ~ 20:00)
오 전	08:00 ~ 12:00	
오 후	13:00 ~ 17:00	
야 간	18:00 ~ 22:00	

2.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기준	사 용 료			비 고
		순수예술	예술행사	대중공연	
대공연장 (1,200석)	1일	400,000	600,000	1,000,000	
	오전	100,000	200,000	400,000	
	오후	150,000	250,000	400,000	
	야간	200,000	300,000	500,000	
소공연장 (450석)	1일	200,000	300,000	500,000	
	오전	50,000	100,000	250,000	
	오후	100,000	150,000	250,000	
	야간	150,000	200,000	300,000	
전 시 실	제1전시실(251㎡)	50,000			제2,제3전시실 통합운영가능
	제2전시실(132㎡)	26,000			
	제3전시실(132㎡)	26,000			
세미나실	제1세미나실(150㎡)	75,000			냉난방비포함
	제2세미나실(200㎡)	100,000			
연 습 실	1회 4시간기준 (입실부터퇴실까지)	70,000			냉난방비포함

○ 공연대관 1일이라함은 09:00 ~ 22:00까지를 말한다.

- 순수예술은 무용, 연극, 국악, 클래식, 아동극, 어린이뮤지컬등을 말한다.
- 예술행사는 오페라, 뮤지컬을 말한다.
- 대중공연은 대중음악, 콘서트, 일반행사(유치원,초,중,고교 학생발표회 포함)등을 말한다.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 공연준비, 연습 및 철수를 위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로 한다.
- 심야(22:00)이후 사용료는 매 3시간 단위로 하며, 사용료는 야간사용료의 150%로 한다.
- 제2, 제3전시실은 통합전시가 가능하며 통합시 사용료는 더한 금액과 같다.
- 세미나실 사용시간은 1일 09:00 ~ 22:00로 하며, 냉난방비포함 가격으로 한다.
- 연습실은 1회 4시간 기준으로 하며 냉난방비포함 가격으로 한다.

3.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준	사용료	비 고
조 명 설 비	기본조명	대공연장	1회	50,000	
		소공연장	1회	30,000	
	FOLLOW PIN		1회	20,000	운용인력 별도
	무빙라이트		1회	30,000	운용인력 별도
	포그머신		1회	10,000	
음 향 설 비	녹음		1회	20,000	녹음CD 사용자부담
	무선(핀)마이크		대당/1회	10,000	운용인력 별도
	유선마이크(기본 3대) (추가 대당 5,000)		1회	10,000	배터리는 사용자 부담
	음향콘솔		1회	50,000	
	빔프로젝트	대공연장 (12,000Ansi)	1회	50,000	운용인력 별도
소공연장 (10,000Ansi)		1회	40,000		
무 대 설 비	음향반사판	대공연장	1일	40,000	
		소공연장	1일	30,000	
	오케스트라 리프트		1일	30,000	
	측무대(이동무대)		1일	30,000	
	회전무대(이동무대)		1일	30,000	
	승강무대(무대리프트)		1일	30,000	
	무용매트(댄싱플로어)		1일	60,000	테이프 및 설치, 철거 사용자 부담
덧 마 루		1일	40,000	설치, 철거 사용자 부담	

(단위 : 원)

구		분	기준	사용료	비 고
무 대 설 비	피아노	외산	1회	60,000	조율은 전당측 지정 조율사가 하며 조율비는 사용자부담
		국산	1회	30,000	
분장실	개인·단체분장실, 귀빈실		실당/1일	10,000	
냉 난방	대공연장		시간당	실사용료	냉방은 7~9월, 난방은 12~3월까지 의무신청 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소공연장		시간당	실사용료	
	전 시 실		시간당	실사용료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2-1991호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

군산 예술의전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일

군 산 시 장

1. 제정이유

군산예술의 전당의 관리·운영 조례의 세부 운영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상 및 공연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2. 제정법규명

◎ 군산 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3. 주요 제정내용

- 가. 시설의 대관시기 및 사용허가 신청시기의 세부규정(안 제2조)
- 나. 시설 사용료 납부 절차, 사용료 반환, 사용료 감면대상 및 신청절차등의 세부사항 규정(안 제4조~제6조)
- 다. 관람권의 할인대상, 관람권의 검인절차, 관람권의 위탁판매 규정의 세부사항 규정(안 제8조~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1월 0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예술의전당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73-869 군산시 대학로 308 예술의전당관리과
(전화:450-6572, FAX:462-9309)

라.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예술의전당관리과 시설운영계(450-6572)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예술의전당의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신청 및 제출서류) ①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한다) 제4조에 따른 전당의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대관은 사용전년도 12월에 신청하며 수시대관은 정기대관의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 수시로 대관신청을 받아 대관여부를 결정한다.

③ 대관신청은 공연 및 행사 책임 주최자가 하여야 하며 유선 또는 구두 신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④ 제2항에 따라 대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설별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납부등) ① 사용료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며 사용자는 사용허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금을 공제한 사용료 잔액은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 체결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계약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사

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사용자가 제2항의 기한 내에 사용료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1항에 따른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용료등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시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전당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약금을 제외한 사용료의 납부기한 전일까지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며, 사용료 잔액을 납부 후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 및 납부한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③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와 함께 사용료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대상 및 신청)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행사, 공연, 전시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군산시지회(이하 “예총시지회”라 한다) 및 예총시지회 산하 각 지부가 영리를 목적으로 아니할 경우 공연장 및 전시실을 합하여 연간 30일 이내. 단, 예총시지회 산하지부가 사용하고자 할 때는 예총시지회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2. 기본사용료의 50%감면 : 예총시지회장의 추천에 의한 문화예술단체의 회원전이나 회원의 작품발표회 또는 학교장 및 총(학)장의 추천에 의한 재학생의 순수예술행사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감액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결재가 완료된 행사계획을 전당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설비 또는 기기관리)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 자 할 때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아 반입시 검사를 필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반출 시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반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권의 할인) 조례 제13조에 따른 관람권의 할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기획공연 등에 2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권을 구입할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2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관람권을 구매할 경우에는 100분의3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할인율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관람권의 검인) ① 사용자가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해 관람권을 발매코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와 관람권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검인부(별지 제8호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제10조(관람권의 위탁판매) ① 사용자가 조례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관람권을 위탁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 대표위탁서(별지 제9호서식)를 대표1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대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 비율의 수수료를 대표종료 즉시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연안전 및 유지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용자와 전당은 다음 각항을 실시한다.

1. 사용자가 배치한 안전요원은 공연장 질서유지를 담당하며 공연지원스텝은 공연전반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며 안전요원 및 공연지원스텝의 인건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2. 전당의 시설물 정기점검일정은 매월 마지막주 1회로 하며 수시점검일정은 필요시 전당에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도 개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대시설 사용 계획

구 분	품 명	단 위	사용여부	비 고
무대설비	피아노 - 외산	1회		
	피아노 - 국산	1회		
	음향반사판 - 대공연장	1일		
	음향반사판 - 소공연장	1일		
	댄스플로어 - 대공연장	1일		테이프 및 설치,철거 사용자 부담
	댄스플로어 - 소공연장	1일		
	오케스트라 리프트	1일		
	승강무대(무대리프트)	1일		
	측무대(이동무대)	1일		
	회전무대(이동무대)	1일		
	덧마루	1일		설치,철거 사용자측
음향설비	음향콘솔 -기본	1회		배터리는 사용자 부담
	빔프로젝트 - 대공연장	1회		운용인원 별도
	빔프로젝트 - 소공연장	1회		운용인원 별도
	유선마이크(기본3대) (추가시 대당 5,000원)	1회		배터리는 사용자 부담
	무선(핀)마이크	1회,대당		운용인력 별도
	녹음	1회		CD사용자 지참
조명설비	기본조명 - 대공연장	1회		
	기본조명 - 소공연장	1회		
	FOLLOW PIN	1회		운용인력 별도
	무빙라이트(콘솔포함)	1대당		운용인력 별도
	포그머신	1회		
분장실	개인·단체분장실,귀빈실	실당,1일		
냉, 난방	대공연장	시간		
	소공연장	시간		
	전 시 설	시간		

허 가 조 건

- 전당은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문화예술의 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 전당의 사용신청서를 접수시 신청인에게 사용허가서와 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발부·고지하오니 각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그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계약 해지 시 기납입한 계약금 전부 및 납입한 사용료의 50%는 위약금으로 공제한다.**
- 사용자는 대관 사용 시 기존 시설물이 훼손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에 의거 사용기간 만료 전에 대상물을 원상복구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음식물 음료 등의 반입을 일체 할 수 없으며 공연에 ()세이하 아동의 출입을 억제하여 공연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본시설(공연장 및 전시실등)을 대관하여 전당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물품홍보, 매매품 홍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일체의 행위**
 - **공연의 지연 또는 공연내용의 변경등으로 민원을 야기시킬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프랑카드 사용시 유의점
 - 프랑카드 게첩 시 공연(전시) 전일까지 예술의전당의 점검 후 지정장소에 게첩 할 수 있습니다.
 - 프랑카드 게첩으로 인한 기준 시설물의 훼손 및 파손 시 사용기간 만료전에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게첩한 프랑카드는 사용만료와 동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예술의전당(공연장, 전시실등)의 사용함에 있어 위 준수사항에 동의하오며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군 산 시 장 귀 하

[별지 제3호 서식]

군산예술의전당 시설사용 허가서

■ 허가사항

사 용 자					
주 소 성 명					
사 용 시 설					
사 용 목 적(제목)					
사 용 기 간	~			(일간)	
사 용 료 계		감면료		냉.난방 사용료	계
사용료납부방법	고지서 납부 혹은 계좌이체()				
납부일자	계약금 :		원	일 까지	
	사용료잔액 :		원	일 까지	

■ 허가조건

1. 군산예술의전당(이하 전당) 조례 및 시행규칙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전당 사용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전당에 그 책임을 전가 할 수 없습니다.
3. 전당 시설 및 집기등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4. 허가취소
 - ①조례의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 ②사용료를 체납하였을때
 - ③공익상 필요할 때 ④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군 산 시 장

[별지 제4호 서식]

군산예술의전당 허가대장

(공연장)

허가		공연명	신청인		사용일	공연내용	비고
번호	월일		성명	주소			

군산예술의전당 허가대장 (전시실)

허가		전시명	신청인		사용일	전시실	비고
번호	월일		성명	주소			

[별지 제6호 서식]

군산예술의전당 사용료감면신청서

공연·전시·행사 명칭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	연락처			자		
공연·전시·행사의 내용							
사용시설 및 설비	기본시설						
	부대시설						
감면신청사유							

군산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붙임 : 추천서)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추천서

- 행사명 :
- 성명(단체명) :
- 행사일정 :

위 (은) 순수한 문화예술행사로 창작활동을 통한 시민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관람권 검인 신청서

- 단체명 :
- 주 소 :
- 대표자 :
- 행사명 :
- 사용시설 :
- 판매기간 :
- 관람권 판매 검인내역

구 분 관람권	검 인 요 청		비 고
	수 량	금 액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군산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검 인 부

일련 번호	검인 년월일	관람권의 종류 ()	매수	검인자	확인자	비고
				성명	성명	

[별지 제9호 서식]

매 표 위 탁 서

- (공연·전시)행사명 :
- 단 체 명 :
- 공연기간 :
- 매표기관 : (전화 :)
- 매표(위탁)수량 :
- 판매수수료 : 판매액의 %

군산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표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산시장 귀하

군산시 고시 제2012-112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군산C.C)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군산C.C)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변경) 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10월 12일

1.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옥서면 옥봉리·선연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 2) 명 칭 : 군산 C.C 조성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1) 면 적 : 4,240,089㎡ (변경없음)
 - 2) 규 모 : 81홀(회원제 18홀, 대중제 63홀)
4.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741번지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레저산업(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단계별 준공계획 변경(7단계 6개월 연장)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당초	대중제 27홀 (’04.06.~’06.02.)	대중제 9홀 (’04.06.~’06.08.)	회원제 18홀 (’04.06.~’07.01.)	대중제 18홀 (’06.05.~’08.01.)	대중제 9홀 (’06.05.~’09.12.)	숙박시설 (’09.10.~’11.12.)	부대시설 (’09.10.~’12.9.)
변경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부대시설 (’09.10.~’13.3.)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등 : 게재 실음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8.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군산시 고시 제2012-113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하고 동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10월 일

1.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9	35	주간선 도로	2,710	산북동 11호광장	옥봉면 국도26호선	일반 도로		건고37 (76.3.27)	
변경	대로	1	9	35	주간선 도로	2,710	산북동 11호광장	옥봉면 국도26호선	일반 도로			가각 변경
기정	중로	1	66	20	집산 도로	893	대1-5	중1-59	일반 도로	미룡신 시가지	군산고210 (96.6.1)	
변경	중로	1	66	19~23	집산 도로	877	대1-5	중1-59	일반 도로			
신설	중로	1	101	24	보조간선	1,116	옥서면 소로1-408	옥서면 1750-11	일반 도로		금회	
신설	중로	1	102	24	보조간선	340	옥서면 대로1-9	중로1-101	일반 도로		금회	
기정	소로	1	121	10	국지 도로	397	소룡동 883 중1-25	소룡동 902 소2-390	일반 도로		전북고135 (78.5.22)	
변경	소로	1	121	10	국지 도로	129	소룡동 883 중1-25	소1-12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122	10	국지 도로	260	소룡동 867 대1-7	소룡동 886 대1-8	일반 도로		전북고135 (78.5.22)	
변경	소로	1	122	10	국지 도로	260	소룡동 867 대1-7	소룡동 886 대1-8	일반 도로			가각 변경
기정	소로	1	268	10	국지 도로	200	대1-5	미룡동 중1-66	일반 도로	미룡신 시가지	군산고210 (96.6.1)	
변경	소로	1	268	10	국지 도로	186	대1-5	미룡동 중1-66	일반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269	10	국지로	394	중로1-66	소로1-291	일반도로	미룡신시가지	군산고210 (96.6.1)	
변경	소로	1	269	10	국지로	394	중로1-66	소로1-291	일반도로			가각변경
기정	소로	1	270	10	국지로	222	대로1-5	중로1-66	일반도로	미룡신시가지	군산고210 (96.6.1)	
변경	소로	1	270	10	국지로	222	대로1-5	중로1-66	일반도로			가각변경
기정	소로	1	293	10	국지로	72	소로1-268	중로1-66	일반도로	미룡신시가지	군산고210 (96.6.1)	
변경	소로	1	293	10	국지로	110	소로1-268	중로1-66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408	8~15	보조간선	1,462	옥서면 옥봉리 34-6도	옥서면 선연리 2066도	일반도로		전북고141 (10.6.11)	
변경	소로	1	408	8~15	보조간선	413	옥서면 옥봉리 34-6도	옥서면 중로1-101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422	10	국지로	277	소로1-123	소로2-390	일반도로		금회	
기정	소로	2	390	8	국지로	453	소룡동516-7 대1-7	산북동349-3 대1-8	일반도로		전북고135 (78.5.22)	
변경	소로	1	423	10	국지로	136	소룡동516-7 대1-7	산북동349-3 대1-8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656	8	국지로	104	중로1-66	소로1-270	일반도로	미룡신시가지	군산고210 (96.6.1)	
변경	소로	2	656	8	국지로	106	중로1-66	소로1-270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659	8	국지로	165	중로1-66	소로1-272	일반도로	미룡신시가지	군산고210 (96.6.1)	
변경	소로	2	659	8	국지로	166	중로1-66	소로1-272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661	8	국지로	203	대로2-10	중로1-66	일반도로	미룡신시가지	군산고210 (96.6.1)	
변경	소로	2	661	8	국지로	203	대로2-10	중로1-66	일반도로			가각변경
기정	소로	2	663	8	국지로	158	소로1-272	중로1-66	일반도로	미룡신시가지	군산고210 (96.6.1)	
변경	소로	2	663	8	국지로	158	소로1-272	중로1-66	일반도로			가각변경
기정	소로	3	407	6	국지로	336	중로1-66	소로2-660	일반도로	미룡신시가지	군산고210 (96.6.1)	
변경	소로	3	407	6	국지로	340	중로1-66	소로2-660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408	6	국지로	160	중로1-66	소로1-271	일반도로	미룡신시가지	군산고210 (96.6.1)	
변경	소로	3	408	6	국지로	160	중로1-66	소로1-271	일반도로			가각변경
기정	소로	3	411	6	국지로	114	중로1-66	소로2-660	일반도로	미룡신시가지	군산고210 (96.6.1)	
변경	소로	3	411	6	국지로	116	중로1-66	소로2-660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412	6	국지로	211	중로1-66	미룡동362-2 소1-291	일반도로	미룡신시가지	군산고210 (96.6.1)	
변경	소로	3	412	6	국지로	212	중로1-66	미룡동362-2 소1-291	일반도로			

2.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서 : 실음생략. 끝.

군산시 고시 제2012-114호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고시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로 2012. 6. 26 준공된 『군산항 모래부두』에 대하여 항만법 제8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 동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10월 일

1. 군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도 시 지 역	전용공업지역	23,071,408	증)11,006	23,082,414	5.06%	
	미 지 정	74,73 6,498	감)11,006	74,72 5,492	16.37%	

2. 군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m ²)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군산시 소룡동 1665-23	도시지역(미지정)	전용공업지역	11,006	250%	• 군산항 모래부두 조성지 용도지역 지정


3. 군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도서 : 실음생략. 끝.

군산시 고시 제2012-116호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및 관련지번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 및 변경된 관련지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10. 15. ~ 10. 29

군 산 시 

○ 도로명주소 부여 : 17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변경 : 2건

지번주소	변경된 도로명주소	종전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폐지 : 1건

종전 지번주소	폐지된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 사유
별 도 열 람				

○ 관련지번 변경 : 6건

도로명주소	변경된 지번주소	종전 지번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 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4-39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고시 제2012-117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 9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 10. 12.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미장지구 A-2블럭 공동주택

2. 사업주체

1) 명 칭 : (주)에스엔엘

2) 대표자 : 홍성분, 전원택

3)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401, 뉴그린빌딩 4층

3. 사업내용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미장지구 A-2블럭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

나. 대지면적 : 47,309.0000m²

다. 건축면적 : 8,871.7475m²

라. 연 면 적 : 152,970.6835m²

마. 건축규모 : 아파트 13동 12~25층, 1,078세대

- 전용 59.9892m² 141세대

- 전용 84.9960m² 435세대

- 전용 84.9757m² 200세대

- 전용 84.9977m² 134세대

- 전용 84.9918m² 54세대
- 전용 84.9924m² 40세대
- 전용 99.9428m² 74세대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사. 사 업 비 : 265,626,271천원

아. 사업기간 : 2012. 11. ~ 2015. 02.

4. 설계도서 : 승인설계도서와 같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 063-450-4228)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1	현대메트로타워2차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군산시 대명동 385-1번지일원	-	증)26,990	26,990	

나.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결정 사유
신설	31	군산시 대명동 385-1번지 일원	26,990	원도심 지역 내 나대지를 활용한 공동주택 건설로 원도심권의 상주인구를 증가시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 양호한 환경의 확보와 기능 및 미관증진 등을 도모하고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2.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폐지	소로	1	74	10	국지 도로	84	경암동 369-31 대3-4	경암동 369-17 소2-736	일반 도로		건고525 ('67.7.25)	
폐지	소로	2	736	8	국지 도로	221 (174)	대명동 383-1 대2-3	대명동 대3-4	일반 도로		전북고136 ('87.10.22)	

나)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폐지	소로 1-74	-	· 노선폐지	· 공동주택부지로 편입	
폐지	소로 2-736	-	· 노선폐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구간 174m 폐지	· 공동주택부지로 편입된 구간폐지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내 용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m ²)		
	1BL	26,990	1-①	대명동 385-1번지 일원	26,212	대지	공동주택용지
			1-②	경암동 371-1번지 일원	462	주출입구 완화차로	도로용지
			1-③	대명동 385-79번지 일원	316	부출입구 완화차로	

다.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1-①	용 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건폐율	· 25% 이하	법정 80% 이하
		용적률	· 450% 이하	법정 1,000% 이하
		높 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름	

라.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 허용구간	· 공동주택용지 진출입구 주변에 대하여 차량출입 허용구간을 지정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차량출입을 불허함	
진출입 완화차로	· 공동주택용지의 진출입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완화차로 (가감속차로) 설치 - 대로3-4호선변 완화차로 : B=3.25m, L=172.5m - 대로2-3호선변 완화차로 : B=3.25m, L=111.0m	

3.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폐지	소로	2	736	8	국지 도로	221 (47)	대명동 383-1 대2-3	대명동 대3-4	일반 도로		전북고136 (‘87.10.22)	

나.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폐지	소로 2-736	-	· 노선폐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구간 47m 폐지	· 공동주택부지로 편입된 구간 외 잔여구간의 도로기능 상실로 폐지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실음생략

군산시 공고 제2012-1951호

국가기초구역 열람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8 제3항 및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기초 구역을 설정코자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지방 관련기관에서는 붙임 의견서 양식에 따라 2012. 10. 31까지 군산시 토지정보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8일
군산시장

1. 국가기초구역 개요

- 기초구역 도입배경
통계·우편 등 각 기관별 구역 설정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통계 등의 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구역관리가 곤란하여 국가 내에 공통 사용 가능한 전국단위 구역관리제도가 필요
- 기초구역 정의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
- 기초구역 활용범위
통계·우편 등 각 기관의 개별 관할구역을 기초구역으로 재설정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민간 물류분야 및 상권분석 등의 기준구역으로 활용

2. 국가기초구역 설정현황

시군구명	국가기초구역 할당 수	국가기초구역 수	예비번호 수
군산시	300	180	120 (54180~54299)

※ 국가기초구역 설정현황과 도로명주소 정보 등은 군산시 토지정보과에 따로 출력(종이),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3. 국가기초구역 고시 예정일 : 2012. 12. 21.

4. 문의

군산시 토지정보과 (☎063-454-3984)

※ 국가기초구역 설정현황, 국가기초구역내 도로명주소 및 지번 현황 토지정보과 별도열람

《별지 1호 서식》

국가기초구역 설정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서

(일련번호 :)

의견제출 기관정보			
관련기관/ 부서명	/		
담당업무/ 성명	/		
연락처/ E-mail	/		
국가기초구역 설정(안)에 대한 의견			
시·도명	전라북도	시·군·구명	군산시
구역번호			
국가기초구역 수정요청사유			
설정안 의견			
기존		변경 의견	

※ 도면은 홈페이지 등의 화면을 캡처하여 파일에 첨부하도록 하며 일련번호는 접수기관에서 부여합니다.

2012년 월 일

<< 별지 4호 서식 >>

국가기초구역 설정에 대한 주민 의견서

(일련번호 : 주민45130-)

의견 제출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연락처			
E-mail			
의견이 있는 국가기초구역			
시·도명	전라북도		
시·군·구명	군산시		
구역번호			
국가기초구역 수정요청 사유			
설정안 의견			
설정안 도면			

※ 설정안 도면은 별도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일련번호는 시군구에서 작성합니다.

국가기초구역 설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며 본 의견제출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조항에 따라 귀 기관에서의 심의결과 통보에 필요한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2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군산시장 귀하

군산시 공고 제2012-195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전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313호선, 소로2-308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전 열람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10월 12일

- 1. 공람기간 : 도보게재 다음 날로부터 14일간
- 2. 공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 3. 실시계획인가 신청요지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개정동 529-1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313호선, 소로2-308호선)사업
 - 2) 명 칭 : 개정 안금동마을 도로개설공사
 -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노 선 명	결정조서		금회 실시계획인가			미개설		비고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면적(m ²)	폭원(m)	연장(m)	
도	소로2-313	8.0	447	8.0	184	1,598	8	263	
로	소로2-308	8.0	580	8.0	126	1,252	8	454	
계			1,027		310	2,850		717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2. 10. ~ 2014.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조서 참조

- 4.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450-4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번	지 번	지목	지 적 (㎡)	도시계획 도로(㎡ ²)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 내용	
1	529-1	전	3,111	998	고영근	군산시 개정동 655-2	군산원예 농협협동 조합	지상권, 근저당	
2	532-12	전	1,841	98	김진순외1인	군산시 개정동 507-81			
3	532-21	전	86	19	오익상	군산시 개정동 531			
4	532-11	도	63	9	오익상	군산시 개정동 531			
5	532-22	도	76	26	오익상	군산시 개정동 531			
6	681	도	1,236	14	국(농수산부)				
7	654	전	1,015	96	고오랑외2인	광양시 금호동목련빌라26/104호			
8	530	전	536	158	최은숙	군산시 사정동 금호타운@105/404호			
9	653	전	377	164	최은숙	군산시 사정동 금호타운@105/404호			
10	652	대	207	34	고영근	군산시 개정동 655-2			
11	산3-1	임	1,190	88	오준희	안양시동안구호경동무궁화@501/204 호			
12	532-26	전	1,038	298	조용례	군산시 개정동 532-9			
13	532-25	대	225	74	고공영	군산시 개정동 532-7			
14	532-7	전	370	351	고공영	군산시 개정동 532-7	군산농업 협동조합	지상권, 근저당	
15	532-8	전	116	20	조용례	군산시 개정동 532-9			
16	534-1	전	552	49	조용례	군산시 개정동 532-9			
17	537-1	전	549	41	고균철	군산시 조촌동 세풍사원@ 가/206호			
18	540-9	전	757	94	오병제	군산시 개정동 531	군산농업 협동조합	지상권, 근저당	
19	538-1	전	731	144	왕정년	군산시 미룡동 주공@ 108/805호			
20	540-10	전	264	75	박영서	군산시 개정동 585-10			
	합계	20필	14,340	2,850					

군산시 공고 제2012-1961호

도시계획시설(유수지)사업 실시계획인가전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유수지:저류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전 열람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10월 12일

- 1. 공람기간 : 도보게재 다음 날로부터 14일간
- 2. 공람장소 : 군산시청 재난관리과
- 3. 실시계획인가 신청요지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나운동.중앙로1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유수지:저류시설)사업
 - 2) 명 칭 : 군산 나운.월명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시 설 명	시 설 결 정		실시계획인가 면적(m ²)	비 고
		위 치	면적(m ²)		
유수지	저류시설	나운동 135-1번지 일원	1,832	1,832	나운1지구
	저류시설	나운동 316-25번지 일원	1,187	1,187	나운2지구
	저류시설	중앙로1가 10-1번지 일원	760.3	760.3	월명지구
계			3,779.3	3,779.3	

-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재난관리과)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2. 10. ~ 2013. 12. 31.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조서 참조

4.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재난관리과(450-44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2-1981호

2012 군산시 생생(生生) 시정발전 시민제안 공모

시민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통한 소통하는 시정 구현과 시민과 함께하는 국가사업 발굴로 체감도 높은 시책을 개발하고자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시정발전 시민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2년 10월 일

군 산 시 장

1. 공 모 명 : 2012 군산시 생생 시정발전 시민 제안 공모

2. 공모내용

- 공모기간 : 2012. 10. 15(월) ~ 11. 11(일)
- 공모자격 : 군산시정에 관심있는 누구나
- 공모분야

- ▶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 및 연계 일자리 창출 방안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 ▶ 청년, 베이붐세대, 여성·장애인등 계층별 적합 일자리 창출 방안
- ▶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방안
(귀농귀촌 활성화, 종자 생명산업 육성, 축산·원예 등 현대화 및 고급화)
- ▶ 근대문화공간조성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 ▶ 전통시장 및 도심 상권 활성화를 통한 도시 재생 방안
- ▶ 생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및 이용 효율화 방안
- ▶ 문화 콘텐츠 산업 발굴 육성 방안
- ▶ 새만금 특화 관광자원 개발 및 비응향 활성화 방안
- ▶ 차별화된 지역 축제 육성 및 활성화 방안(새만금축제,철새축제)
- ▶ 고군산 군도(신시,무녀,선유,장자) 관광 활성화 방안
- ▶ 기타 시정 발전 창의 제안

다음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또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거나 군산시 소관업무가 아닌것
- ❖ 기업체 및 개인의 특정제품 또는 사업의 홍보와 관련된 것 등

3. 응모방법 : 인터넷 또는 우편 및 FAX 접수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국민제안 → 공모제안→군산시 제안 공모 선택 → 응모

○ 우편 및 FAX 접수

☞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우 573-703)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 홈페이지, 팩스는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

우편은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인정

☞ FAX 번호 : 063-452-8157

4 제출서류 : 제안신청서 및 관련 설명서 1부

○ 온라인 응모는 국민신문고에 직접 입력 (붙임 제안서 및 설명서 첨부)하고, 우편 또는 팩스는 붙임 제안서 서식을 이용 작성 제출

※ 신청서류 양식은 군산시(www.gunsan.go.kr)의 [고시/공고]란에서 다운가능

5. 심사 및 선정 : 심사기준, 심사방법 『군산시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의해 창의성, 실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선정

6. 심사결과 발표 : 2012. 12월중

○ 군산시 홈페이지 게재 및 수상자에 한해 개별통지

7. 포상규모

구 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비 고
시상인원	1	2	5	
시상 내용	상장, 상금 100만원	상장, 상금 50만원	상장, 상금 10만원	

- ① 심사결과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해당 등급은 시상하지 않을 수 있거나, 일부 미선정 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에 따라 채택 되었다라 시상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 ② 시상자를 제외한 최종심사까지 올라간 제안에 대해 온누리상품권(2만원) 지급

8. 기타사항

- 국내사례 복사(표절) 제출 및 타 공모전에 선정된 유사 내용은 심사에서 제외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선정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으며 제작 및 제출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제안에 대한 모든 권리는 군산시에 있음
- 동일(유사) 내용 제안 중복 응모시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 심사 선정
- 동일인이 다수 응모가능하나, 동일인의 제안이 다수 선정된 경우 최상위 등급 1건에 대해서만 시상 및 부상금 지급
- 공동응모자는 제안서에 대표자를 기재하고 시상금은 대표자에게 지급함
- 응모자는 아이디어제안이 기한 내에 도착되도록 하여야하며, 송부 지연으로 인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 팩스 접수시 군산시 담당자의 수신 여부 반드시 확인
- 제안내용의 표절 등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 있으며, 시상이후 발견시 상장 및 시상금은 환수조치 등
- 기타 사항 문의처 :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063-450-6101)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생생(生生)시정발전 시민 제안서

접 수 번 호

수신 : 군산시장 귀하

제안 제목			
주 제안자	성명 (서명)	기여도 (%)	
공동 제안자	성명 * 공동제안인 경우만 기재	기여도 (%)	
주 제안자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		

〈개 요〉

〈현황 또는 문제점〉

(뒤쪽)

생생(生生) 시정발전 시민 제안서

〈개선방안〉

〈기대효과〉

〈첨부서류〉

- 제안설명서(A4용지 5~10매 분량, 자유서식) 1부
- * 자세한 설명이 더 필요시 참고자료(사진 등) 첨부

2012/2013년도 어업면허 처분 공고

군산시 공고 제2012-1982호

2012/2013년도 군산시 어장이용개발계획에 의한 어업면허 처분사항에 대하여 수산업법시행령 제21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0. 12

군 산 시 장

○ 어업면허 처분 사항

어업의종류	양식방법	면허번호	면적 (ha)	면허기간	어장위치	면허처분일	어업권자
마을어업	-	5270	13	2012. 10.11 ~ 2015. 10.10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해역	2012.10.11	신시도어촌계 대표 어촌계장